

##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6. “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p> <p>가. ~ 마. (생략)</p> <p>바. 입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u>장소</u></p> <p>7. ~ 11.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 ----- -----.</p> <p>가. ~ 마. (현행과 같음)</p> <p>바. ----- <u>장소</u> (이하 “<u>입국장 인도장</u>”이라 한다)</p> <p>7. ~ 11. (현행과 같음)</p>	<p>○ 입국장 인도장 정의 명확화</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1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가. (생략)</p> <p>나. 「<u>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에 따른 <u>재외동포로서</u>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 사증)이나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여권(PR)을 소지한 자</p> <p>다. (생략)</p> <p>13. ~ 15. (생략)</p>	<p>12. ----- -----.</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u>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u>」 제2조제1호--- - <u>재외국민으로서</u> ----- ----- ----- ----- -----</p> <p>다. (현행과 같음)</p> <p>13. ~ 15. (현행과 같음)</p>	<p>○ 띄어쓰기 수정</p> <p>○ 인용 조항 내용 명확화</p>

현행	개정안	비고
<p>&lt;신설&gt;</p> <p>제3조(운영인의 의무) ① ~ ⑪ (생략)</p> <p>&lt;신설&gt;</p> <p>제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① (생략)</p>	<p>16. “사이버몰”이란 「관세법」 제2조 제19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p> <p>제3조(운영인의 의무) ① ~ ⑪ (현행과 같음)</p> <p>⑫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여권 또는 제2조 제12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외 세관장이 인정하는 신원확인방법(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p> <p>제5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① (현행과 같음)</p>	<p>○ 온라인 쇼핑 플랫폼의 정의 명확화</p> <p>○ 구매자의 인적사항 확인 절차를 명확화하고, 디지털 신원인증 방식도 구매자의 신원확인 방법에 포함</p>

현행	개정안	비고
<p>②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는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행객(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p> <p>③ ~ ⑤ (생략)</p> <p>⑥ 운영인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매자의 출입국 여부 및 구매총액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⑦ (생략)</p> <p>제6조(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 신청) ①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판매용물품을 보관창고(통합물류창고 또는 지정장치장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p>	<p>② ----- 한정하여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⑥ ----- 구매총액 (입국장면세점 운영인에게만 적용한다) -----.</p> <p>⑦ (현행과 같음)</p> <p>제6조(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 신청) ① ----- 지정장치장을 포함한다. -----</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 입국장면세점에서만 구매총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명확화</p> <p>○ 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허용</p>

현행	개정안	비고
<p>다)에 반입한 후 매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② 운영인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보관창고에 반입하는 때에는 전자문서 방식 또는 <u>별지 제1호 서식</u>에 따라 반입신고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같음한다.</p> <p>③ ~ ⑧ (생략)</p> <p>&lt;신설&gt;</p>	<p>-----</p> <p>----- 다만, 운영인이 사전에 세관장에게 반입전 판매를 신청한 물품은 판매(구매 주문만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한다) 이후에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에 반입할 수 있다.</p> <p>② -----</p> <p>----- <u>별지 제1호서식</u> -----</p> <p>-----</p> <p>③ ~ ⑧ (현행과 같음)</p> <p>⑨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일 이후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영업개시일 전이라도 감시단</p>	<p>○ 띄어쓰기 수정</p> <p>○ 영업개시일전 물품 반입 허용(예비특허제도 도입)</p>

현행	개정안	비고
<p>제11조(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 ① (생략)</p> <p>②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려는 때에는 <u>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물품판매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u>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lt;단서 신설&gt;</p>	<p>속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보세판매장에 물품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p> <p>제11조(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 <u>별지 제5호서식의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물품판매 신고서에 제1호 내지 제3호의</u> -----</p> <p>-----</p> <p>----- 다만,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한 판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제2호의 서류(해당 사이버몰 관련)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한다.</p>	<p>○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입점하여 판매하는 것을 허용</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1. ~ 3. (생 략) &lt;신 설&gt;</p> <p>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운영인과 통신판매업신고인이 같은 법인인 지 여부와 전자상거래 운영방법, 구매절차 및 결제방법이 적절한 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p> <p>④ ~ ⑥ (생 략) &lt;신 설&gt;</p>	<p>1. ~ 3. (현행과 같음) 4. 사업계획서</p> <p>③ ----- ----- 법인인 지 여부(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물을 통한 판매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와-----.</p> <p>④ ~ ⑥ (현행과 같음)</p> <p>⑦ 운영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사이버물을 중소·중견기업 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p>	<p>○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물 입점여부 및 운영적정성 확인 자료</p> <p>○ 중소·중견면세점의 경우 공동으로 인터넷 면세점 운영 허용</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12조(판매물품의 보세운송) ① ~ ③ (생 략)</p> <p>④ 운영인은 교환권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 신고서(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관할 지세관장에게 신고 후 수리를 받아 보세운송신고 건별로 행낭 또는 각종 운반 박스 등에 넣은 후 운영인 책임하에 <u>시건</u> 또는 봉인을 한 후 인도장으로 보세운송하되, 탑승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입국장 인도장의 경우 도착을 말한다)예정 2시간 전(인도장 관할 세관장이 보세판매장과 인도장의 거리, 교통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1시간 전으로 한다)에 도착되도록 한다. 다만, 각종 운반 박스 등으로 포장되어</p>	<p>제12조(판매물품의 보세운송)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 ----- <u>잡금</u> ----- ----- ----- ----- ----- -----</p>	<p>○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404)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시간이 어려운 경우, 봉인만 한 후 운송할 수 있다.</p> <p>⑤ · ⑥ (생략)</p> <p>제13조(인도자 지정 등) ① (생략)</p> <p>② 인도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와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인도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5년의 범위(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u>잔여</u>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임차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도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자의 지정은 법제172조에 따른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인도자의 지정기간의</p>	<p><u>잠금</u>----- -----.</p> <p>⑤ · ⑥ (현행과 같음)</p> <p>제13조(인도자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남은</u> ----- ----- ----- ----- ----- ----- ----- ----- -----</p>	<p>○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법제처 알기 쉬운법령팀-404)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갱신 및 지정취소에 대하여는 각각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다.</p> <p>1. (생략)</p> <p>2. 지정기간 갱신 및 지정내용 변경</p> <p>가. (생략)</p> <p>나. 세관장은 지정기간 갱신신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심사하고 5년의 범위(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u>잔여</u>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임차기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간의 갱신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는 승인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 -----.</p> <p>1. (현행과 같음)</p> <p>2. ----- 가. (현행과 같음)</p> <p>나. ----- ----- ----- <u>남은</u> ----- ----- ----- ----- -----</p>	<p>○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법제처 알기 쉬운법령팀-404)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다. (생략)</p> <p>3. (생략)</p> <p>③ 세관장은 인도장의 수용능력 초과로 추가설치가 필요하거나 공항·항만출국장내에서 공간이 협소하여 인도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세화물 관리와 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내에서 출국장 인접 보세구역에 <u>한하여</u> 1년의 범위내에서 임시인도장을 지정할 수 있다.</p> <p>제14조(판매물품의 인도) ① ~ ④ (생략)</p> <p>⑤ 인도자는 인도장에 보세운송 물품이 도착된 때에 제12조제4항에 따라 <u>시건</u>과 봉인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p>	<p>다.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③ ----- ----- ----- ----- ----- <u>한정하여</u> ----- -----.</p> <p>제14조(판매물품의 인도) ① ~ 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잠금</u> ----- -----</p>	<p>○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p>○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법제처 알기 쉬운법령팀-404)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u>시건</u>을 개봉하고 보세운송 책임자와 인도자가 판매물품 인수인계서(별지 제12호서식의 반송 및 간이 보세운송 신고서를 판매물품 인수인계서로 <u>개서사용</u>)을 작성하여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보세운송 도착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p> <p>⑥ ~ ⑩ (생략)</p> <p>⑪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해상화물 송부의뢰서(별지 제11호서식) 3부 중 1부를 구매자에게 교부하고, 2부는 판매물품과 함께 구매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법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 또는 항공·해상화물 탁송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세관 공무원 입회하에 통관우체국 담당공무</p>	<p><u>잠금</u>----- ----- ----- ----- <u>고쳐 사용</u> ----- ----- -----.</p> <p>⑥ ~ ⑩ (현행과 같음)</p> <p>⑪ ----- ----- ----- ----- ----- ----- ----- ----- -----</p>	

현행	개정안	비고
<p>원 또는 항공·해상화물 송부의뢰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p> <p>1. 판매장 순찰공무원은 판매물품 중 일부를 발췌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후 <u>시건과</u> 세관봉인을 하여야 한다.</p> <p>2. 3. (생략)</p> <p>⑫ (생략)</p> <p>⑬ 보세판매장의 물품은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내역이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되거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 반송신고(내국물품의 경우 <u>수출신고</u>)한 것으로 보며, 인도장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하거나 국제우체국 또는 공항·항만 보세구역으로 보세</p>	<p>----- -----.</p> <p>1. ----- ----- ----- ----- <u>잠금</u>-----.</p> <p>2. 3. (현행과 같음)</p> <p>⑫ (현행과 같음)</p> <p>⑬ ----- ----- ----- <u>수출신고를</u> <u>말한다</u>----- ----- -----</p>	<p>○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법제처 알기 쉬운법령팀-404) 반영</p> <p>○ 문장 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p>운송신고하여 수리된 때 반송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내국물품의 경우 인도된 때 수출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p> <p>⑭ (생략)</p> <p>제17조(대금영수) 판매대금은 원화 또는 외화로 영수할 수 있으며, 외화로 영수하였을 때에는 환율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절사하고 거스름돈이 없을 때에는 원화로 <u>지불</u>하여야 한다.</p> <p>제18조(미인도 물품의 처리) ① 인도자는 판매물품이 인도장에 반입된 후 5일 이상이 경과하여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미인도 물품목록을 작</p>	<p>----- ----- ----- <u>다만, 내국물품의 경우</u> <u>인도된 때 수출신고가 수리된 것으</u> <u>로 본다.</u></p> <p>⑭ (현행과 같음)</p> <p>제17조(대금영수) ----- ----- ----- ----- <u>지급</u>----- -----.</p> <p>제18조(미인도 물품의 처리) ① ----- ----- ----- -----</p>	<p>○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법제처 알기 쉬운법령팀-404) 반영</p> <p>○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법제처 알기 쉬운법령팀-404)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성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고, 인도자의 입회하에 현품을 행낭 또는 각종 운반용 박스 등에 넣은 후 보세사가 <u>시건</u> 또는 봉인을 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취소 등 구매자의 미인수 의사가 명확한 미인도 물품에 대하여는 인도장 반입 후 5일 경과 전이라도 운영인에게 인계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제19조(반품, 분실물 등의 처리) ① ~ ③ (생략)</p> <p>④ 운영인이 판매물품을 교환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u>보세판매장에</u> 재반입 절차를 <u>취하고 교환하여 주</u></p>	<p>----- ----- ----- <u>잡금</u> ----- ----- ----- ----- ----- ----- ----- -----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9조(반품, 분실물 등의 처리)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보세판매장</u> ----- <u>또는 통합물류창고에</u> - <u>취하고, 교환하여</u></p>	<p>○ 해외에서 반품된 물품의 통합물류창고 직반입 허용</p> <p>○ 의미 명확화를 위한 쉽표</p>

현행	개정안	비고
<p>는 물품은 판매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상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병기하여야 하며, 판매물품을 환불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에 재반입 절차를 취하며 반환된 현금은 판매취소로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p> <p>⑤ 보세판매장 물품이 분실 그 밖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 수량을 월간 매출액과 대비하여 상관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때에는 범칙조사 절차없이 해당세액을 추징하고 재고대장에서 공제 처리한다. 다만, 부족 물품의 발생하유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후 통고처분</p>	<p>----- ----- ----- ----- ----- ----- ----- ----- ----- ----- -----</p> <p>⑤ -----</p>	<p>삽입</p> <p>○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의 용어 개정사항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u>고발(송치)의뢰</u>를 하여야 한다.</p> <p>제23조(세관장의 업무감독) ① ~ ⑥ (생략)</p> <p>⑦ 제4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u>준용한다</u>.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p>	<p>----- ----- ----- ----- <u>조사의뢰</u> ----- -----.</p> <p>제23조(세관장의 업무감독) ①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 ----- ----- <u>따른다.</u> ----- ----- -----</p>	<p>○ 문장 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p>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p> <p>1. · 2. (생략)</p> <p>제24조(담당공무원의 임무)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판매물품 및 미인도물품의 보세운송행낭의 봉인·<u>시건</u> 및 이상유무 확인</p>	<p>----- -----.</p> <p>1. · 2. (현행과 같음)</p> <p>제24조(담당공무원의 임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 ----- <u>잠금</u> -----</p>	<p>○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법제처 알기 쉬운법령팀-404)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5. ~ 12. (생략)</p> <p>제25조(보세사의 임무) ①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은 운영인이 하여야 한다.</p> <p>1. ~ 4. (생략)</p> <p>5. 보세운송 행낭의 <u>시건</u> 및 봉인과 이상유무 확인과 이상보고</p> <p>6. 세관봉인대의 <u>시봉</u> 및 관리</p> <p>7. (생략)</p> <p>② 운영인 및 보세사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운영인</p>	<p>5. ~ 12. (현행과 같음)</p> <p>제25조(보세사의 임무) ① -----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잠금</u> ----- -----</p> <p>6. ----- <u>봉인·잠금</u> -----</p> <p>7. (현행과 같음)</p> <p>② -----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와</p>	<p>○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404) 반영</p> <p>○ 인용조문 수정 및 문장정비</p>

현행	개정안	비고
<p>등의 의무 및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보세사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p> <p>제28조(행정제재) ① · ② (생략)</p> <p>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장에 판매물품의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5. 제12조제4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u>시건</u> 또는 봉인 없이 보세운송한 때</p> <p>6. ~ 8. (생략)</p> <p>④ · ⑤ (생략)</p> <p>제29조(청문) ① 세관장은 제28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때</p>	<p>「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의무----- ----- -----</p> <p>제28조(행정제재)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잠금</u> -----</p> <p>6. ~ 8.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제29조(청문) ① ----- -----</p>	<p>○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안(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404) 반영</p> <p>○ 문장부호 추가</p>

현행	개정안	비고
<p>에는 법 제328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전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p> <p>② (생략)</p> <p>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제4항에서 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u>그리하지 아니한다.</u></p>	<p>----- 「행정절차법」 -----</p> <p>-----</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p> <p>제4조-----</p> <p>-----</p> <p>-----</p> <p>----- <u>그렇지 않다.</u></p>	<p>○ 인용 조항 수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반영</p>

현행	개정안	비고
<p>1. ~ 3. (생략)</p> <p>제30조(서류의 보관) (생략)</p> <p>&lt;신설&gt;</p> <p>제31조(준용규정) ① ~ ③ (생략)</p> <p>④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4항을 준용한다.</p> <p>제33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u>2022년</u> 7월</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30조(서류의 보관) ① (현행 제목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자료보관매체(마이크로필름·광디스크·그밖의 전산매체)에 보관할 수 있다.</p> <p>제31조(준용규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 제6항 -----</p> <p>제33조(재검토기한) -----</p> <p>----- <u>2023년</u> -----</p>	<p>○ 면세점 판매자료 등의 전자매체 보관을 통한 업무간소화</p> <p>○ 인용조항 수정</p> <p>○ 재검토기한 변경</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lt;신 설&gt;</p>	<p>----- ----- ----- -----</p> <p style="text-align: center;"><b>부칙&lt;고시 제2023-00호, 2023. 1. &gt;</b></p> <p>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월 00일부터 시행한다.</p> <p>제2조(면세점 창고 반입 전 판매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 규정은 관련 전산시스템이 개선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p> <p>제3조(해외반입물품의 통합물류창고 직 반입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관련 전산시스템이 개선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p>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별지 제5호 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신고서</td> <td style="text-align: right;">처리기간 1일</td> </tr> <tr> <td>신고인</td> <td>① 보세판매장 명칭 ② 사업 자 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 표 자</td> <td></td> </tr> <tr> <td>신고사항</td> <td>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⑥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⑦ 판매개시 예정일 ⑧ 인터넷도메인 ⑨ 호스트/차터 주소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⑩ 프로그램 개발자 ⑪ 사업 자 등록번호 ⑫ 유지보수 사업자 ⑬ 사업 자 등록번호 ⑭ 유지보수의 범위 ⑮ 계약기간</td> <td></td> </tr> <tr> <td colspan="2"> <p>「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 물품을 판매하고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새관장 귀하</p> </td> <td></td> </tr> <tr> <td>첨부서류</td> <td>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2.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사본 3.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서(위탁하는 경우에 한함)</td> <td style="text-align: right;">수수료 없 음</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10mm×297mm[일반용지 60g/보(재활용품)]</p>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 보세판매장 명칭 ② 사업 자 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 표 자		신고사항	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⑥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⑦ 판매개시 예정일 ⑧ 인터넷도메인 ⑨ 호스트/차터 주소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⑩ 프로그램 개발자 ⑪ 사업 자 등록번호 ⑫ 유지보수 사업자 ⑬ 사업 자 등록번호 ⑭ 유지보수의 범위 ⑮ 계약기간		<p>「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 물품을 판매하고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새관장 귀하</p>			첨부서류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2.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사본 3.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서(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p>(별지 제5호 서식)</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신고서</td> <td style="text-align: right;">처리기간 1일</td> </tr> <tr> <td>신고인</td> <td>① 보세판매장 명칭 ② 사업 자 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 표 자</td> <td></td> </tr> <tr> <td>신고사항</td> <td>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⑥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⑦ 판매개시 예정일 ⑧ 인터넷도메인 ⑨ 호스트/차터 주소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⑩ 프로그램 개발자 ⑪ 사업 자 등록번호 ⑫ 유지보수 사업자 ⑬ 사업 자 등록번호 ⑭ 유지보수의 범위 ⑮ 계약기간</td> <td></td> </tr> <tr> <td colspan="2"> <p>「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 물품을 판매하고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새관장 귀하</p> </td> <td></td> </tr> <tr> <td>첨부서류</td> <td>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2.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사본 3.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서(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4. 사업계획서</td> <td style="text-align: right;">수수료 없 음</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210mm×297mm[일반용지 60g/보(재활용품)]</p>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 보세판매장 명칭 ② 사업 자 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 표 자		신고사항	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⑥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⑦ 판매개시 예정일 ⑧ 인터넷도메인 ⑨ 호스트/차터 주소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⑩ 프로그램 개발자 ⑪ 사업 자 등록번호 ⑫ 유지보수 사업자 ⑬ 사업 자 등록번호 ⑭ 유지보수의 범위 ⑮ 계약기간		<p>「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 물품을 판매하고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새관장 귀하</p>			첨부서류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2.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사본 3.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서(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4.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 음	<p>○ 제11조제2항 개정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 개정</p>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 보세판매장 명칭 ② 사업 자 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 표 자																															
신고사항	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⑥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⑦ 판매개시 예정일 ⑧ 인터넷도메인 ⑨ 호스트/차터 주소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⑩ 프로그램 개발자 ⑪ 사업 자 등록번호 ⑫ 유지보수 사업자 ⑬ 사업 자 등록번호 ⑭ 유지보수의 범위 ⑮ 계약기간																															
<p>「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 물품을 판매하고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새관장 귀하</p>																																
첨부서류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2.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사본 3.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서(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수수료 없 음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신고서		처리기간 1일																														
신고인	① 보세판매장 명칭 ② 사업 자 등록번호 ③ 주 소 ④ 대 표 자																															
신고사항	⑤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⑥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⑦ 판매개시 예정일 ⑧ 인터넷도메인 ⑨ 호스트/차터 주소 ※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⑩ 프로그램 개발자 ⑪ 사업 자 등록번호 ⑫ 유지보수 사업자 ⑬ 사업 자 등록번호 ⑭ 유지보수의 범위 ⑮ 계약기간																															
<p>「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세판매장 물품을 판매하고자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 새관장 귀하</p>																																
첨부서류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2.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사본 3.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서(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4. 사업계획서	수수료 없 음																														